

## ■ 최신 판례 ■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영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이광선 변호사 | 백규하 변호사

실제 근무형태나 운영시간의 변경이 없는데도 단지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다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려는 고의는 없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죄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회사의 대표이사 A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게 되자, 실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는데도 2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위와 같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영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지 ②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쟁점 ①에 대하여 대법원 2019년 4월 18일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영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제1차 취업규칙 및 제2차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쟁점 ②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피고인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피고인에게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1) 사납금 증액 여부를 둘러싼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사납금을 증액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법 저축 문제를 극복하고, 택시운전근로자로서도 사납금 증액을 피해가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성립하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점, (2) 소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제2차 취업규칙과 이와 연계된 근로계약을 통해 알 수 있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고정급은 종전 취업규칙 당시와 비교할 때 다소 늘어났고, 총 수입 역시 특별히 감소하지는 않았던 점, (3)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과 관련해 당시 고용노동부의 명시적 지침이나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4) 순차로 단축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이 사건 피고인이 그에 따라 계산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는데도 단지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이는 무효이고, 다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